

임·직원 인권보호와 구민 및 이해관계자 인권증진을 위한

인 권 영 향 평 가 보 고 서



2022. 12.

마 포 구 시 설 관 리 공 단

목 차

1. 인권경영 추진 개요.....	3
2. 2022년 인권경영 추진 사항.....	4
3. 인권인식(실태)조사 실시 결과.....	6
4. 인권인식(실태)조사 결과 분석.....	12
5.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16
6.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19
7.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환류.....	23
8. 붙임 1. 분야별 세부 평가결과.....	24
- 인권인식(실태)조사 세부 평가 결과.....	24
-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 결과.....	59
9. 붙임 2. 지표별 정의서.....	76
10. 붙임 3. 인권경영 이행규정.....	77

202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에 대한 요구 필연
-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의 중요성 대두
- 사후구제절차 및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사전적 예방절차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메뉴얼 적용 권고 및 실천의 선도적 역할 요구

2 추진체계

추진 목표	인권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류 파트너 공기업			
추진 과제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 공개	구제절차 제공
실행 전략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내부(각 부서) 및 외부(유관 · 협력기관) 인권경영 선언 공유 및 확산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운영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사업) 실행 · 전 과정 공개	· 구제절차 수립 · 시행 · 구제절차 개선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행 지침	인권경영 체계 강화 · 인권경영 선언 · 실행지침 등 관련규정 점검 및 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 인권경영 부서별 담당자 및 임 · 직원 교육 체계 강화	평가 및 피드백 강화 · 기관 및 중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시행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 평가보고서 작성(전년도 평가결과 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포함) · 평가결과 최고경영진 보고 · 평가결과 공개	인권경영 사업 실행 및 공개 강화 · 인권리스크 분석 검토 및 방지조치 수립 · 부서별 인권담당자 협의 통한 방지조치 강화 · 인권경영 추진과정 공개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전파 · 노력 및 성과 공개(공시)	구제절차 시행 및 개선 · 구제위원회 구성 · 구제절차 수립, 홍보 · 구제절차 시행 · 진정한 익명성 보장 · 평가 및 개선

① 인권경영 시스템 관련 개선 추진

내부 프로세스 개선 공유 확산	내부 성과평가 지표 구체화	-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 인권경영 지표(안) 수립 - 경영기획팀 성과평가지표 수립 시 반영요청(인사담당)
	이행에 따른 포상	지표 기준으로 연말 인권경영 우수부서 선정 후 포상(예정)

② 내부 인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이행	인권경영 TF팀 조직 추진	- 인권경영 TF팀 분기별 회의 통해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발굴 추진 - 중간 점검 및 실적 공유를 통해 개선점 발굴 추진
	운용 프로세스 개선	협력회사에 자문, 컨설팅, 교육지원의 형태로 지속적 인권경영 지원
임·직원 인권인식 강화	계층별 교육 강화	- 신규직원, 인권경영실무자, 중간관리자 및 부서장, 임원으로 구분 실시 - 계층별 교육 내용 세분화하여 실시
	취약 분야별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취약 근로자 및 리스크 발생 예방 관리직 분야 구분 맞춤 교육 - 근로자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실시(현장 대면, 온라인 등) - 인권 퀴즈대회 개최하여 교육효과 제고
	인권경영 참여 및 전파	- 공단 게시판서별 담당 및 홈페이지 통한 인권인식 자료 공유 - 인권경영캠페인 추진 및 인권향상 아이디어 발굴
인권침해 방지 및 리스크예방	갑질위험성 진단 실시	- 진단항목 : 일반직(4개 분야 40개 항목), 공무·현업직(1개 분야 10개 항목) - 진단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비공개무기명 진단 실시
	인권인식 실태조사	정기 인권인식 실태조사 지속 시행으로 인권리스크 사전 분석 및 예방

③ 대외 인권인식 확산 및 인권경영 전파 노력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인권경영 강화	인권경영 요청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권경영체계 수립(규정 제도화 등) 요청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인권 및 안전 위한 법령준수 요청
	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지원	- 인권경영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통보, 개선 요청 - 결과에 따라 인권경영 자료 공유 및 교육지원 실시
인권경영 공개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관련 성과 보고 및 자료 공유
	외부 고객 및 구민	- 공단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인권경영 내용 공개 -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방법 다양화 - 인권경영과정 공개 : 인권경영 활동 이해관계자 공개 등 -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 공개 : 일반대중을 상대로 최종보고서 공시

④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지속 추진(재인증 획득)

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 9명(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4인)
- 주요업무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및 인권개선 권고, 기타 인권경영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제절차 도입 및 운영

인권침해행위 처리 절차	신고 인권침해 발생	접수/확인 → 감사혁신팀	→ 침해위반 확인	조사/보고 →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개최 → 인권경영위원회	시정/조치 → 명령/교육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심의를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 위원구성 : 9명으로 구성(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외부(5명) : 인권전문가 1인, 변호사 1인, 장애인 관련 1인, 노무사 2인 - 내부(4명) : 경영본부장, 감사혁신팀장, 근로자 대표 2인					

7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 평가내용 : 기관 및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자 :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 평가원칙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 평가절차

계획 수립	⇒	평가지표 검토·작성	⇒	평가지표 교육	⇒	부서별 관련자료 제출	⇒	인권위원회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	---------------	---	------------	---	----------------	---	----------------------	---	------------------

- 평가방법
 - 인권실태 및 인식조사
 - 지표설정 :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20개 계량화된 지표 설정
 - 평가결과 활용 :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기초로 활용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10개분야(158개 지표) 활용 평가
 - 주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지표 : 인권에 영향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리스크의 사전 파악 위한 지표 설정
 - 선정사업 : 마포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시설관리분야,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구분	기관운영 평가지표	주요사업 평가지표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공정 운영
2	고용상의 비차별	사업자 선정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안전 보장
5	아동노동의 금지	근무자 인권보호
6	산업안전보장	시설운영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 환경보장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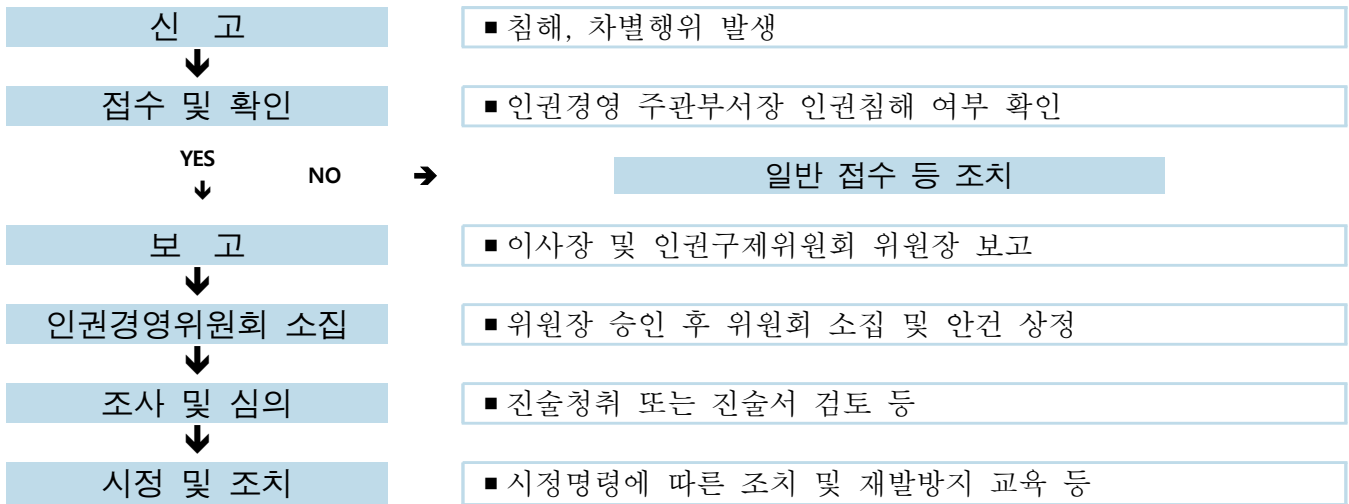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⑧ 인권침해 구제심의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으로 구성
- 주요업무 : 직장내 괴롭힘 심의, 인권침해 사안 심의
- 위원명단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동일
-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절차



- 신고내용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유형

- ✓ 공권력에 의한 : 정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인권침해
- ✓ 차별 행위에 의한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 시설의 이용에 있어 특정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

Ⅲ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실시결과

①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개요

- 실시기간 : 2022. 11. 30. ~ 12. 14.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 이해 관계자 인터뷰, 서면평가 실시
- 조사 표본 수

구분	계	이해관계자(외부)			이해관계자(내부)		
		소비자	현지주민	협력업체	마포구청	구의회	직원
계	331	140	140	20	7	4	20
공영주차장	47	20	20	5	-	-	2
거주자주차장	48	20	20	5	1	-	2
구민체육센터	42	20	20	-	1	-	1
아현문화건강센터	42	20	20	-	1	-	1
우리마포복지관	42	20	20	-	1	-	1
마포주민편익시설	45	20	20	2	1	-	2
마포농수산물시장	46	20	20	2	1	-	3
경영기획팀/감사혁신팀	19	-	-	6	1	4	8

※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구분하여 조사표본수 산정

②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외부) 평가 지표

- 소비자(고객) : 3개 분야 15개 지표(소비자 보호, 사생활 보호, 제품결함 시 조치)
- 현지주민 : 2개 분야 10개 지표(지역주민 인권 존중 및 보호, 주민 지적재산권 보호)
- 협력업체 : 3개 분야 10개 지표(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이해관계자(내부) 평가 지표

- 평가 대상 : 마포구청, 마포구 의회, 공단 직원
- 지표 수 : 10개 분야 158개 지표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보호)

③ 인권인식(실태)조사 결과

□ 소비자(고객)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2.8	93.3
1	공 주 차 장	영 차 장	계		91.3	90.2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97.5	95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85	85.4
2	거 주 자 우 선 주 차 장	우 선 차 장	계		83.3	80.2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90	82.5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76.7	77.9
3	마 포 구 민 체 육 센 터	구 민 체 육 센 터	계		99.2	100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100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8.3	100
4	아 현 문 화 건 강 센 터	문 화 건 강 센 터	계		94.8	90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95	8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4.6	100
5	우 리 마 포 복 지 관	마 포 복 지 관	계		98.5	99.6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100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7.1	99.2
6	마 포 주 민 편 익 시 설	주 민 편 익 시 설	계		94.6	98.9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100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89.2	97.9
7	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	농 수 산 물 시 장	계		88.1	93.9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결함 시 조치	90	9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86.3	97.9

□ 현지주민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1.2	93.1
1	공 주 차 영 장	계		88.3	86.7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87.5	85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89.2	88.3
2	거 주 자 우 선 주 차 장	계		87.5	81.3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0	87.5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85	75
3	마 포 구 민 체 육 센 터	계		93.3	96.7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0	97.5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6.7	95.8
4	아 현 문 화 건 강 센 터	계		90.8	90.9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0	87.5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1.7	94.2
5	우 리 마 포 복 지 관	계		94.2	98.8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2.5	10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5	97.5
6	마 포 주 민 편 익 시 설	계		92.1	97.9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0	10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4.2	95.8
7	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	계		92.1	99.2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92.5	10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1.7	98.3

□ 협력업체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5.2	95
1	경 영 기 획 팀 (전부서 수합)	계		95.2	95
		분야1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95	93.8
		분야2	모니터링 실시	96.3	94.2
		분야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94.4	97.1

□ 마포구청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5.4	95.7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계		94.6	94.8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6.4	97.9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5.2	95.8
		분야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1.4	90
		분야4	인권경영 성과	96.9	95.5
		분야5	구제절차 마련	92.9	94.8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계		96.7	98.6
		분야1	고용상 비차별	98.6	10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	94.0	95.8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97.6	100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결 사 및 단 체 교 섭 의 자 유 보 장	계		100	100
		분야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10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	100
4	강 제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00
		분야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산 업 안 전 보 호	계		92.9	92.6
		분야1	작업장 안전	88.6	92.5
		분야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94.6	95.3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95.7	95
		분야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92.9	87.5
7	책 임 있 는 공 급 망 관 리	계		92.3	90.1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4.6	95.3
		분야2	모니터링 실시	92.9	84.4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9.3	90.6
8	현 지 주 민 의 인 권 보 호	계		92.9	93.8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92.9	93.8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9	환 경 권 보 호 장	계		88.9	87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1.4	83.8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	89.3	87.5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2.9	93.8
		분야4	비상계획 수립	82.1	82.8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계		95.2	100
		분야1	소비자 인권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	100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0.5	100

□ 마포구의회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0.5	91.74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계		92.3	93.2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1.7	100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3.8	88.5
		분야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0	90
		분야4	인권경영 성과	94.6	92.9
		분야5	구제절차 마련	91.7	94.8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계		92.6	97.2
		분야1	고용상 비차별	92.5	10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	89.6	91.7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95.8	100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결 사 및 단 체 교섭의 자유보장	계		100	100
		분야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10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	100
4	강 제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00
		분야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산 업 안 전 보 장	계		83	86.4
		분야1	작업장 안전	80	87.5
		분야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4.4	90.6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80	86.3
		분야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87.5	81.3
7	책 임 있 는 공 급 망 관 리	계		82.3	81.3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0.6	84.4
		분야2	모니터링 실시	81.3	71.9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5	87.5
8	현 지 주 민 의 인 권 보 호	계		87.5	87.5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87.5	87.5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9	환 경 권 보 장	계		84.1	83.2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0	76.3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	87.5	84.4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3.8	93.8
		분야4	비상계획 수립	75	78.1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계		83.3	88.6
		분야1	소비자 인권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	87.5	81.3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79.2	95.8

□ 공단 직원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2022년	2021년
				94.9	95.61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계		95.2	93.9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7.5	96.7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6.3	92.5
		분야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2.5	92
		분야4	인권경영 성과	96.4	97.9
		분야5	구제절차 마련	93.3	90.4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계		95.6	100
		분야1	고용상 비차별	96	10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	94.2	100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96.7	100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결 사 및 단 체 교 섭 의 자 유 보 장	계		99.3	100
		분야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10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97	100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	100
4	강 제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00
		분야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산 업 안 전 보	계		93.1	95.3
		분야1	작업장 안전	90	94.5
		분야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97.5	98.8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90	98
		분야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95	90
7	책 임 있 는 공 급 망 관 리	계		87.9	87.1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6.3	90
		분야2	모니터링 실시	85	81.3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2.5	90
8	현 지 주 민 의 인 권 보 호	계		92.5	90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92.5	9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9	환 경 권 보 장	계		89.7	90.8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0	95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	88.8	87.5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3.8	92.5
		분야4	비상계획 수립	86.3	88.1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계		96	99
		분야1	소비자 인권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	100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2.1	97.9

① 이해관계자(외부) 인권 인식(실태) 조사

① 이해관계자(외부) 인권 인식(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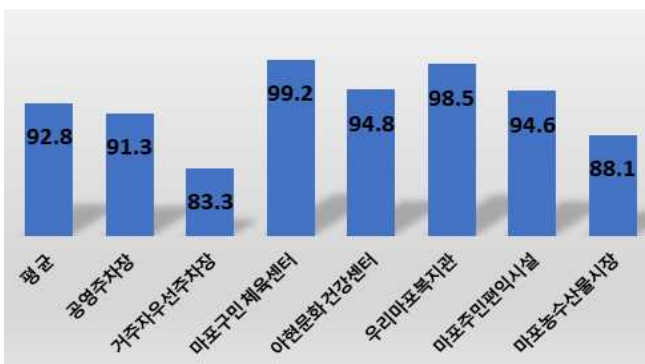
□ 인권 인식(실태)조사 총괄표



연번	평가지표	점수	
		2022년	2021년
	평 균	93.1	93.8
1	소비자(고객)	92.8	93.3
2	현지주민	91.2	93.1
3	협력업체	95.2	95

-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인식 조사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1등급으로 유지
- 소비자(고객)분야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 등이 전반적으로 공단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판단됨
- 협력업체가 2년 연속 높은 점수를 나타낸 요인으로 부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인권실행 TF팀 지속 운영, 협력업체에 대해 실시한 인권관련 프로그램(인권경영 모니터링 2년연속 시행, 인권교육 지원 및 실시 요청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인권경영 전과 노력에 따른 효과로 보여짐
- 지역주민과 연계한 인권 교육 및 참여 가능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지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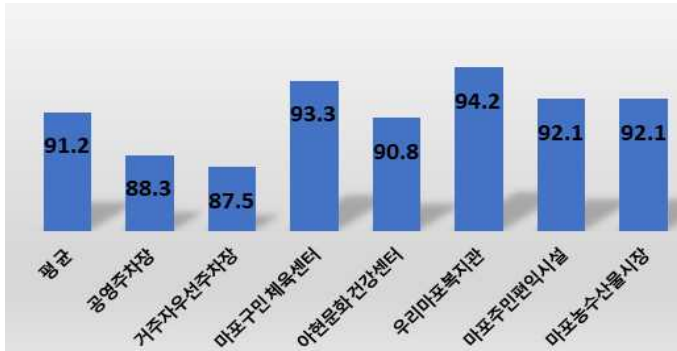
□ 사업장별 소비자(고객)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2.8
1	공영주차장	91.3
2	거주자우선주차장	83.3
3	마포구민 체육센터	99.2
4	아현문화 건강센터	94.8
5	우리마포복지관	98.5
6	마포주민편익시설	94.6
7	마포농수산물시장	88.1

-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주차장 운영 부분과 시장 운영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공단에 느끼는 인권 인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사업 영역(주차요금 수납, 시장 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인식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함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 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객의 알권리 보호 및 인권보호 제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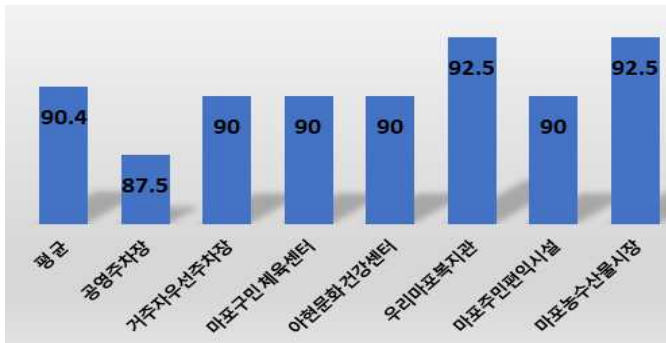
□ 사업장별 현지주민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1.2
1	공영주차장	88.3
2	거주자우선주차장	87.5
3	마포구민 체육센터	93.3
4	아현문화 건강센터	90.8
5	우리마포복지관	94.2
6	마포주민편익시설	92.1
7	마포농수산물시장	92.1

- 주요사업장별 전년도와 비슷한 점수로 평균 1등급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전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현지주민 인권인식이 크게 상승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등급이나 전년도(81.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상승이 있었음. 거주자주차장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 주민과의 협업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 요인으로 보여짐

지역주민 인권 존중·보호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0.4
1	공영주차장	87.5
2	거주자우선주차장	90
3	마포구민 체육센터	90
4	아현문화건강센터	90
5	우리마포복지관	92.5
6	마포주민편익시설	90
7	마포농수산물시장	92.5

- 이슈가 되는 주요 항목인 ‘지역주민 인권 존중·보호’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1등급(90.4점)을 유지하였고, 공영주차장은 전년도(85점)에서 소폭 상승함. 이는 노상주차장 부스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인근 상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것이 그 요인으로 판단됨

□ 협력업체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5.2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5
2	모니터링 실시	96.3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94.4

- 협력업체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으며, 향후 더 강화된 업체별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인권리스크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내부) 인권 인식(실태) 조사

① 이해관계자(내부) 인권 인식(실태) 조사

□ 인권 인식(실태)조사 총괄표



연번	평가지표	점수	
		2022	2021
	평 균	93.6	94.3
1	마포구청	95.4	95.7
2	마포구의회	90.5	91.7
3	공단 직원	94.9	95.6

- 이해관계자(내부) 인권 인식(실태)조사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1등급을 나타내며 인권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
- 향후 마포구의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단 인권경영에 대해 전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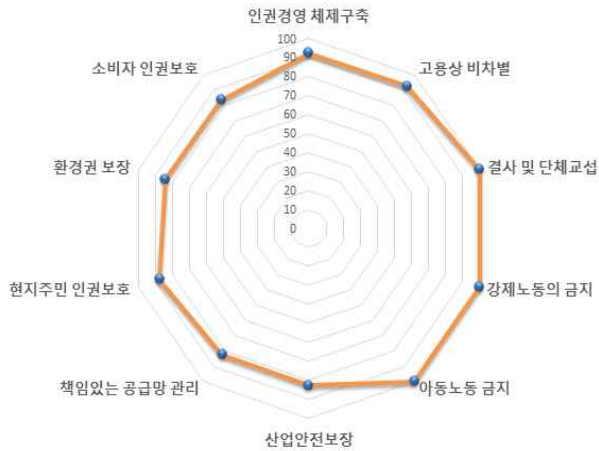
□ 마포구청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2022	2021
	평 균	95.4	95.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4.6	94.8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98.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6	산업안전보장	92.9	92.6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2.3	90.1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2.9	93.8
9	환경권 보장	88.9	87
10	소비자 인권보호	95.2	100

- 마포구청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1등급(평균 95.4)으로 평가
- 2년 연속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수준진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과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2년 연속 적합 판정 등 각 분야의 객관적 평가 결과의 영향으로 대외적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경영 체제 구축’ 분야 점수가 높게 평가됨
- ‘환경권 보장’은 전년과 동일하게 2등급으로 향후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공단의 환경권 보장 노력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들과 협력 및 지속적 업무 공유를 통해 실적 전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산업안전보장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공단의 조직을 개편하고 이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구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의회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2022	2021
평균		90.5	91.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2.3	93.2
2	고용상의 비차별	92.6	97.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6	산업안전보장	83	86.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2.3	81.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7.5	87.5
9	환경권 보장	84.1	83.2
10	소비자 인권보호	83.3	88.6

- 평균 90.5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등급을 유지함. 산업안전보장 분야와 환경권, 소비자 인권보호,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등 지역사회와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모두 2등급으로 평가됨.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의회 관계자들이 공단에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더 많음을 시사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이 되는 공급망 관리는 가장 점수가 낮으므로 전산 시스템 정비 등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부 직원 인권인식 결과



연번	평가지표	2022	2021
평균		94.9	95.6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5.2	93.8
2	고용상의 비차별	95.6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99.3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6	산업안전보장	93.1	95.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7.9	87.1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2.5	90
9	환경권 보장	89.7	90.8
10	소비자 인권보호	96	99

- 공단 내부직원 인권 인식(실태)조사 결과 94.9점으로 전년도 95.6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1등급을 나타내고 있으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환경권 보장 분야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2. 12. 19. ~ 12. 27.

○ 평가단 구성 : 평가지표별 위원과 주관부서 지정

구분	평 가 지 표	위 원	소 속	담당부서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김창기 황진택	나도기브컨설팅 대표 상임이사	감사혁신팀
2	고용상의 비차별	남은숙 윤병구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감사혁신팀장	경영기획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백형순 김상돈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공단 노조위원장	경영기획팀
4	강제노동의 금지	이지혜 차홍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무사 민주노총 공단 분회장	경영기획팀
5	아동노동의 금지	방미진 김상돈	하나노무법인 대표 공단 노조위원장	경영기획팀
6	산업안전보장	김창기 차홍곤	나도기브컨설팅 대표 민주노총 공단 분회장	경영기획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백형순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경영기획팀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방미진	하나노무법인 대표	감사혁신팀
9	환경권 보장	남은숙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경영기획팀
10	소비자 인권보호	이지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무사	감사혁신팀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2. 12. 19. ~ 12. 27.

○ 평가단 구성 : 평가지표별 위원과 주관부서 지정

구분	평 가 지 표	위 원	소 속	담당부서
1	공정 운영	백형순 황진택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상임이사	사업부서
2	사업자 선정	백형순 윤병구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감사혁신팀장	사업부서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김창기 김상돈	나도기브컨설팅 대표 공단 노조위원장	사업부서
4	안전 보장	김창기 차홍곤	나도기브컨설팅 대표 민주노총 공단 분회장	사업부서
5	근무자 인권보호	방미진 김상돈	하나노무법인 대표 공단 노조위원장	사업부서
6	시설운영	남은숙 차홍곤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민주노총 공단 분회장	사업부서
7	지역주민 환경보장	이지혜 윤병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무사 감사혁신팀장	사업부서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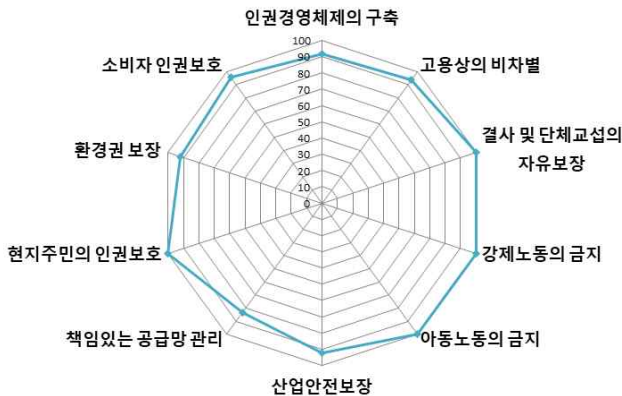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2022	2021
	총 합 점 수		94.9	95.7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계	91.5	91.3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1.6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1.6
		분야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0
		분야4	인권경영 성과	92.8
		분야5	구제절차 마련	91.6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계	93.9	100
		분야1	고용상 비차별	9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	91.6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없음
3	결 사 및 단 체 교섭의 자유보장	계	100	100
		분야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해당없음
4	강 제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강제 노동의 금지	100
		분야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계	100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6	산 업 안 전 보 장	계	92.5	95
		분야1	작업장 안전	80
		분야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90
		분야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7	책 임 있 는 공 급 망 관 리	계	83.3	79.2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7.5
		분야2	모니터링 실시	75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7.5
8	현 지 주 민 의 인 권 보 호	계	100	100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0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해당없음
9	환 경 권 장 보	계	91.9	91.9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0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	100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분야4	비상계획 수립	87.5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계	95.8	100
		분야1	소비자 인권보호	해당없음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91.63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2022	2021
	총 합 점 수			91.3	92.2
1	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	계		94.0	95.8
		분야1	공정운영	100	87.5
		분야2	사업자 선정	100	100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7.5	100
		분야4	안전보장	87.5	100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
		분야6	시설운영	100	100
		분야7	지역주민 환경보장	83.3	83.3
2	체 육 분 야	계		92.4	89.5
		분야1	공정운영	100	100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3.3	83
		분야4	안전보장	87.5	87.5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83.3	100
		분야6	시설운영	100	100
		분야7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66.6
3	시 설 관 리 분 야	계		91.0	95.1
		분야1	공정운영	100	87.5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75	100
		분야4	안전보장	87.5	100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83.3	83.3
		분야6	시설운영	100	100
		분야7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거 주 자 우 선 주 차 장	계		95.8	98.2
		분야1	공정운영	100	100
		분야2	사용자 선정	100	100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7.5	87.5
		분야4	안전보장	100	100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83.3	100
		분야6	시설운영	100	100
		분야7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5	공 영 주 차 장	계		83.3	82.5
		분야1	공정운영	100	87.5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50	50
		분야4	안전보장	100	100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66.6	100
		분야7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75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평가결과



연번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평 균	95.7	94.9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1.3	91.5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93.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6	산업안전보장	95	92.5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79.2	83.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100
9	환경권 보장	91.9	91.9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95.8

평가결과 권고 의견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1등급(94.9점) 달성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는 전년 3등급에서 소폭 상승하여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현재 공단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수준 및 교육 등을 좀더 강화할 것을 권고
- ✓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보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1등급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및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 및 보완할 것
- ✓ 평가등급 체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90점	90점미만~80점	80점미만~70점	70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40점	40점미만~30점	30점미만~20점	20점미만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① 인권경영 체계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협력회사에 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교육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에는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단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협력회사의 활동도 영향평가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권고함

② 고용상의 비차별

- 전년도에 이어 1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는 바, 세부 평가 항목에서 여성직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다는 구의회 의원들의 평가를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③ 산업안전 보장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로 보건 분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는바 그간 공단이 시행한 다양한 방역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됨
-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공단 내 환기와 음용수, 세면대, 음식 보관시설,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보건 취약 분야의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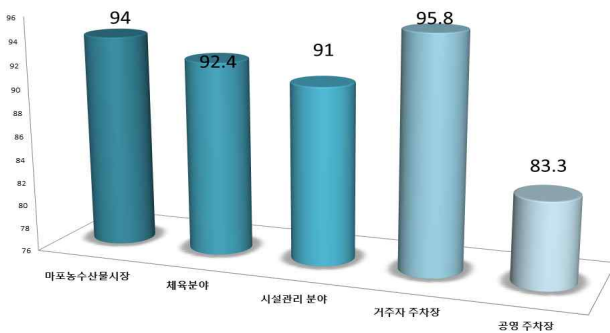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으므로 작업장의 안전 장구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권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고함

④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현재 법적으로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력사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2년 연속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향후에는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여부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력사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사항을 요구하거나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단은 미비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보안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 경우 보안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요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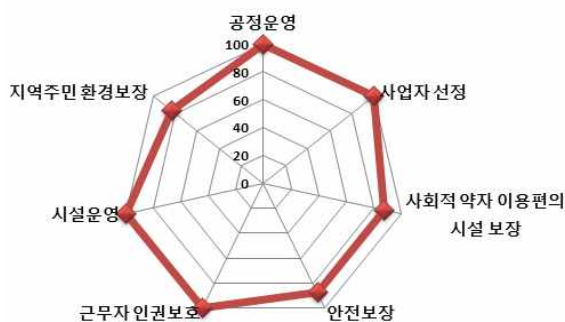


연번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평 균		92.4	91.3
1	마포농수산물시장	95.8	94
2	체육분야	89.5	92.4
3	시설관리 분야	95.1	91
4	거주자 주차장	98.2	95.8
5	공영 주차장	82.5	83.3

- 주요사업 분야별 전체 평균은 전년과 동일하게 1등급을 나타냄
- 체육분야가 다소 상승하여 1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의 점수가 전년과 동일하게 2등급으로 평가됨

□ 세부 사업별 평가결과 및 권고의견

○ 마포농수산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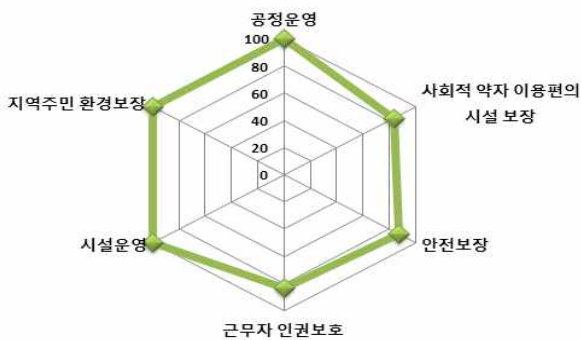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4.0
1	공정운영	100
2	사업자 선정	100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7.5
4	안전보장	87.5
5	근무자 인권보호	100
6	시설운영	100
7	지역주민 환경보장	83.3

- 입주자 선정을 위해 온비드를 이용하는 등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더욱 공정한 방법을 도입한 것은 적극 개선한 것으로 평가함

- 마포농수산물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음. 하지만 시장은 주로 중년 이상의 고객층이 많고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이동 고객이 발생되므로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판, 노인을 위한 게시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요구 기준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므로 근무자를 위한 안전 장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이동 차량을 위한 통로 환경 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함
-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전년도 권고사항인 시장 내 환기창호 설치 등을 적극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시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향후에도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쓰레기(폐수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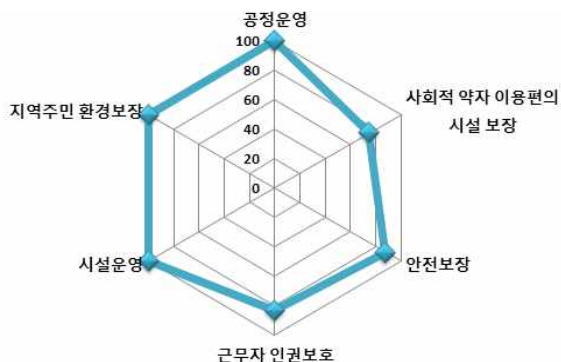
○ 체육 분야(마포주민편의시설)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2.4
1	공정운영	10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3.3
3	안전보장	87.5
4	근무자 인권보호	83.3
5	시설운영	100
6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를 위한 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기관의 규모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특히 어린이집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는 더욱 적극적인 개선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므로 공단에서는 정기적 순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를 권고함
-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감정노동근로자,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직 직원 등 주 근무 공간이 사무실이 아닌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직원 니즈에 맞게 휴게실 개선을 권고함

○ 시설관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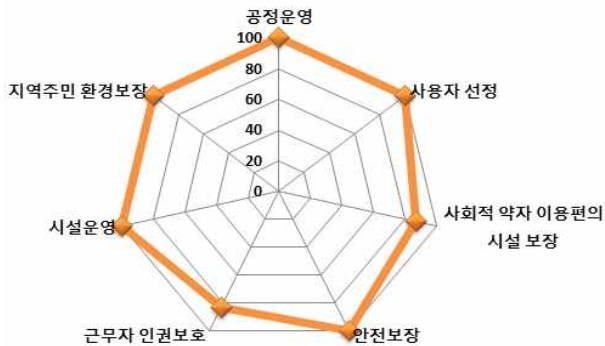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1
1	공정운영	10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75
3	안전보장	87.5
4	근무자 인권보호	83.3
5	시설운영	100
6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 전년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인권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확대 설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다양하여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확충 수준이 각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시설마다의 수준을 보편화 시키기 위해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마포구청, 마포구민체육센터 수준으로 각 시설의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확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각 시설마다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더 확충 및 개선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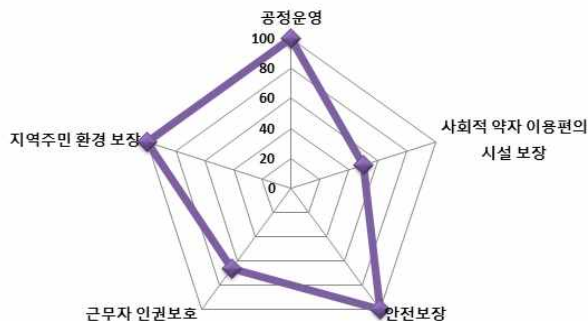
○ 거주자우선주차장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5.8
1	공정운영	100
2	사용자 선정	100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7.5
4	안전보장	100
5	근무자 인권보호	83.3
6	시설운영	100
7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 장애인, 저시력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므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
-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복사기·복서기 등에 대비한 업무 물품 지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공영주차장



연번	평가지표	점수
평 균		83.3
1	공정운영	10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50
3	안전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66.6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 장애인, 저시력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시설(안내판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므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
-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복사기·복서기 등에 대비한 업무 물품 지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직원들이 화장실 이용 문제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총 평

- 공단은, 지난 2018년 「인권 경영 이행지침」 제정 이후 인권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 경영 내부 규정화, 인권경영 현장 선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등 인권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함
- 또한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도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 실행 TF팀’을 조직하여 분야별,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음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산업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단이 시행한 다양한 방역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에 대한 인권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환기를 철저히 하고 음용수, 세면대, 음식 보관시설,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람
- 보건 취약 분야의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전염병 예방 보건 교육 등 지속적 실시 권고
-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공공 기관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으므로 작업장의 안전 장비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고함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가 주요 이슈인 만큼 미비한 전산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개인 정보 영향 평가」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마포 농수산물시장 사업을 보면, 시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재래 시장은 주로 중년층 이상의 고객이 많고,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유동인구(고객)가 발생하므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안내 게시판 확대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함
- 체육분야에서는, 기관의 규모에 맞게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를 위한 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근로자,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주로 근무하는 공간이 사무실이 아닌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휴게실을 점차 개선하기를 권고함
- 시설관리 분야를 보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다양하여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이 각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시설의 수준을 보편화 시키기 위해 가장 잘 되어있는 ‘우리마포복지관’, ‘마포구청’ 수준으로 각 시설의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주차장 분야에 대한 공통 개선사항으로,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흡연기·흡서기 등에 대비한 물품 지급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여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화장실 이용 문제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 환류체계

BSC 성과지표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평가지표	[인권영향평가 점수 달성도]					
	- 지표유형 : 정량 - 지표산식 : 인권영향평가 점수 - BSC 관점 : 내부프로세스 - 연계핵심가치 : 융복합역량강화, 고객가치 극대화, 사회적가치 극대화					
부 서 별 평가항목	- 경영기획팀 · 감사혁신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수 - 문화체육팀 : 체육시설 인권영향평가 점수 - 공영주차 · 거주자주차팀 : 주차관리 분야 인권영향평가 점수 - 시설안전팀 : 시설관리분야 인권영향평가 점수					

붙임 1 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① 인권 인식(실태) 조사 세부평가 결과

□ 소비자(고객) 인권 인식(실태)조사서 - 92.8

1. 공영주차장(조사인원 20명)		91.3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 음	해 당 없 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97.5점)					
	점 수	95	2.5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19	1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85점)					
	점 수	83.3	1.7	0	0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7			3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6	1		3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6	1		3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1		3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7	1		1	

2. 거주자 주차장(조사인원 20명)		83.3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90)					
	점 수	80	10	0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16	4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76.7)					
	점 수	60.8	15.8	0	0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	7		1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2	6		2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6	3		1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1	8		1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8		2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2	6		2

3. 마포구민체육센터(조사인원 20명)

99.2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100점)					
	점 수	100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2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98.3점)					
	점 수	96.7	1.7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20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20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20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8	2			

4. 아현문화건강센터(조사인원 20명)			94.8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95점)					
	점 수	90	5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18	2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94.6점)					
	점 수	89.2	5.4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8	2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8	2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20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7	3			
6	소비자의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6	4			

5. 우리마포복지관(20년 영리체육관)(조사인원 20명)				98.5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100점)					
	점 수	100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2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97.1점)					
	점 수	94.2	2.9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9	1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20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8	2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20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8	2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8	2			

6. 마포주민편의시설(조사인원 20명)			94.6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100점)					
	점 수	100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2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89.2점)					
	점 수	83.3	5.8	0	0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2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8	2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6	2		2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7	2		1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3		1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7	3			

7. 마포농수산물시장(조사인원 20명)

88.1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께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점수 : 90점)					
	점 수	80	10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16	4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86.3점)					
	점 수	78.3	7.9	0	0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3		1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6	2		2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4	4		2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6	3		1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4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6	3		1	

□ 현지주민 인권 인식(실태)조사서 - 91.2

1. 공영주차장(조사인원 20명)		88.3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87.5점)					
	점 수	80	7.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6	3		1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89.2점)					
	점 수	85.0	4.2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6	2		2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18			2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7	3			
2. 거주자우선주차장(조사인원 20명)		87.5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0점)					
	점 수	80	10	0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6	4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85점)					
	점 수	85.0	0.0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7			3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18			2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6			4	

3. 마포구민체육센터(조사인원 20명)		93.3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0점)					
	점 수	90	-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8			2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96.7점)					
	점 수	96.7	0.0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0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20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8			2	

4. 아현문화건강센터(조사인원 20명)		90.8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0점)					
	점 수	85	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7	2		1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91.7점)					
	점 수	90.0	1.7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8	2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18			2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8			2	

5. 우리마포복지관(조사인원 20명)		94.2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2.5점)					
	점 수	85	7.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7	3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95점)					
	점 수	93.3	1.7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8			2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20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8	2			

6. 마포주민편의시설(조사인원 20명)		92.1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0점)					
	점 수	80	10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6	4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94.2점)					
	점 수	90.0	4.2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8	1		1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18	2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8	2			

7. 마포농수산물시장(조사인원 20명)

92.1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점수 : 92.5점)					
	점 수	85	7.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7	3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점수 : 91.7점)					
	점 수	90.0	1.7	0	0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18	2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18			2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8			2	

□ 협력업체 인권 인식(실태)조사서 - 95.2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점수 : 95점)					
	점 수	90.0	5.0	0	0	-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20				
2	공단은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공단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12	8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20				
4	공단은 협력공단과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20				
분야2	모니터링 실시(점수 : 96.3점)					
	점 수	92.5	3.8	0	0	-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20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공단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17	3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점수 : 94.4점)					
	점 수	91.3	3.1	0	0	-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7	3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16	2		2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20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0				

□ 마포구청 이해관계자 인식(실태)조사서(조사인원 7명) - 95.4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4.6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점수 : 96.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2.9	3.6	-	-	-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7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7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6	1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2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7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개선된다.	7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점수 : 95.2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0.5	4.8	-	-	-	
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7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7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7					
4	기업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5	2				
5	자회사나 협력공단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5	2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분야3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점수 : 91.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5.7	-	-	-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7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7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6	1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2				
5	자회사나 협력공단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5	1				
분야4	인권경영 성과(점수 : 96.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3.9	3.1	-	-	-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7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6	1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7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1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6	1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7					
분야5	구제절차 마련(점수 : 92.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7.1	-	-	-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6	1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7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5	2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6	1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7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5	2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분야1	고용상 비차별(점수 : 98.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7.1	1.4	-	-	-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7				
2	공단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7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6	1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점수 : 9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		-	-	
1	공단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7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7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5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7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6	공단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8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점수 : 97.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5.2	2.4	-	-	-
1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6	1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7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8
2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자공단,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8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분야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7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4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7					
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7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7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7					
2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7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7					
4	공단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7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7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헌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7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강제 노동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7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7				
3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7				
4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7				
5	공단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7				
6	공단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7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7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7				
분야2	자공단·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7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7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7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7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7				
3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7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7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7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7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 조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7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7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7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7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7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7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7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6. 산업안전 보장

92.9

분야1	작업장 안전(점수 : 88.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7.1	11.4	-	-	-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5	2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6	1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5	2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2		1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6	1			
분야2	임산부 등 장애인 보호(점수 : 94.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9.3	5.4	-	-	-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6	1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7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5	2		2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점수 : 95.7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1.4	4.3	-	-	-
1	공단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	1		2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6	1		2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6	1			
4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7				
5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분야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점수 : 92.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7.1	0	0	
1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7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7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6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92.3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점수 : 94.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9.3	5.4	-	-	-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7				
2	공단은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공단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3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7				
4	공단은 협력공단과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7				
분야2 모니터링 실시(점수 : 92.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7.1	-	-	-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7	0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공단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5	2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점수 : 89.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1.3	9.4	-	-	-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7	1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6	2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7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7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92.9				
분야1	지역주민 인권 존중·보호(점수 : 92.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7.1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7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6	1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7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7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7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7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7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7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7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7

9. 환경권 보장		88.9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점수 : 91.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2.9	8.6	-	-	-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6	1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5	2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5	2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7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6	1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점수 : 89.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8.6	10.7	-	-	-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5	2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6	1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7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점수 : 92.9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7	7.1	-	-	-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6	1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7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6	1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7
분야4	비상계획 수립(점수 : 82.1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7.9	14.3	-	-	-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6	1			
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2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3	3		1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공단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5	2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7

10. 소비자 인권보호							95.2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7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7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7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7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7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7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7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7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7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90.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3.3	7.1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6	1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6	1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6	1		1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7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	1		1	

□ 마포구의회 이해관계자 인식(실태)조사서(조사인원 4명) - 90.5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2.3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점수 : 91.7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3.3	8.3	-	-	-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4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4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3	1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2	2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4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개선된다.	3	1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점수 : 93.8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7.5	6.3	-	-	-
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4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4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4				
4	기업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3	1			
5	자회사나 협력공단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2	2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분야3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점수 : 9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0.0	10.0	-	-	-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4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4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4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1			
5	자회사나 협력공단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1	3			
분야4	인권경영 성과(점수 : 94.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9.3	5.4	-	-	-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4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1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4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3	1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3	1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4				
분야5	구제절차 마련(점수 : 91.7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3.3	8.3	-	-	-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3	1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4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3	1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4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4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	2			

2. 고용상의 비차별		92.6				
분야1	고용상 비차별(점수 : 92.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0	7.5	-	-	-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				
2	공단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4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1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점수 : 89.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9.2	10.4	-	-	
1	공단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4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2	2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1	3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6	공단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4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점수 : 95.8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1.7	4.2	-	-	-
1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 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0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1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4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4
2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자공단,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분야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4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4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4					
2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4					
4	공단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4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4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강제 노동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4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3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4				
4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4				
5	공단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4				
6	공단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4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4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4				
분야2	자공단·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4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4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4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3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4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4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4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 조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4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4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4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4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6. 산업안전 보장

83

분야1	작업장 안전(점수 : 8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5.0	15.0	-	-	-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3	1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3	1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2	1		1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2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3	1			
분야2	임산부 등 장애인 보호(점수 : 84.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8.8	15.6	-	-	-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2	2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4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1	3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점수 : 8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5.0	15.0	-	-	-
1	공단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	2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1			
4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2	1		1	
5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분야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점수 : 8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5.0	12.5	-	-	-
1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4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4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3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2.3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점수 : 90.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1.3	9.4	-	-	-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4				
2	공단은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공단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1	3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4				
4	공단은 협력공단과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4				
분야2	모니터링 실시(점수 : 81.3점)					
구분	3	1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	3	-	-	-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4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공단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1	3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점수 :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50.0	25.0	-	-	-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1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1	3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4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4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87.5				
분야1	지역주민 인권 존중·보호(점수 : 8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5.0	12.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4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3	1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4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4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4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4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4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8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8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8

9. 환경권 보장

84.1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점수 : 8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0.0	20.0	-	-	-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3	1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1	3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2	2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	1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3	1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점수 : 8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5.0	12.5	-	-	-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3	1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3	1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4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점수 : 93.8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7.5	6.3	-	-	-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3	1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4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4
분야4	비상계획 수립(점수 : 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50.0	25.0	-	-	-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3	1			
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1	3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공단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2	2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4

10. 소비자 인권보호			83.3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4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4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4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4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점수 : 8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5.0	12.5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8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8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3	1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79.2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62.5	16.7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1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	3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3	1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2	2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0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1		1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식(실태)조사서(조사인원 20명) - 94.9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2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점수 : 9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점 수		96.7	0.8	-	-	-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0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20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19	1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18			2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19	1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개선된다.	20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점수 : 96.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점 수		94.2	2.1	-	-	-	
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20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20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20					
4	기업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18	2				
5	자회사나 협력공단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15	3		2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					
분야3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점수 : 92.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점 수		89.0	3.5	-	-	-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0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20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19	1		1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2				
5	자회사나 협력공단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12	4		2		
분야4	인권경영 성과(점수 : 96.4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점 수		93.6	2.9	-	-	-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0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8	2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0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19	1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18	2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18	1		1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18	2				
분야5	구제절차 마련(점수 : 93.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점 수		87.5	5.8	-	-	-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17	3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20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18	2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17	3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17	3		1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16	3		1		

2. 고용상의 비차별		95.6				
분야1	고용상 비차별(점수 : 96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2.0	4.0	-	-	-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0				
2	공단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18	2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9	1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5	5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점수 : 94.2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8.3	5.8	-	-	
1	공단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0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18	2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0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8	12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0				
6	공단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0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점수 : 96.7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3.3	3.3	-	-	-
1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 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	0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0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16	4			
분야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20
2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20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자공단,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2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9.3

분야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20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0				
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0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2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점수 : 97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4.0	3.0	-	-	-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20				
2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20				
4	공단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18	2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6	4			
분야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했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20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2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강제 노동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20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0				
3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0				
4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20				
6	공단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20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20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20				
분야2	자공단·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0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20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2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0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0				
3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0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20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20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20				
분야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 조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20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0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0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20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0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0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0

6. 산업안전 보장		93.1				
분야1	작업장 안전(점수 : 9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2.0	8.0	-	-	-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16	4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18	2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16	3		1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16	4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16	3		1	
분야2	임산부 등 장애인 보호(점수 : 97.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5.0	2.5	-	-	-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18	2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20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18	2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점수 : 9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2.0	8.0	-	-	-
1	공단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6	4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14	6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6	4			
4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16	2		2	
5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0				
분야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점수 : 9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0.0	5.0	-	-	-
1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0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20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18	2		2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7.9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점수 : 96.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2.5	3.8	-	-	-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20				
2	공단은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공단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14	6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20				
4	공단은 협력공단과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20				
분야2	모니터링 실시(점수 : 8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0.0	15.0	-	-	-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20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공단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8	12			
분야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점수 : 82.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0.0	12.5	-	-	-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6	4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12	6		2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20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92.5				
분야1	지역주민 인권 존중·보호(점수 : 92.5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0	7.5	-	-	-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0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7	3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20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20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0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20
분야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8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8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8

9. 환경권 보장			89.7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점수 : 9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4.0	6.0	-	-	-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16	4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16	2		2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16	2		2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18	2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18	2				
분야2	환경정보의 공개(점수 : 88.8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7.5	11.3	-	-	-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15	5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16	4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20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점수 : 93.8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90.0	3.8	-	-	-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18	2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0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18	1		1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20	
분야4	비상계획 수립(점수 : 86.3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76.3	10.0	-	-	-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16	2		2		
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5	5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12	7		1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공단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18	2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20	

10. 소비자 인권보호

96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해당 없음)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2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0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0
분야2	제품 결함시 조치(점수 : 100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	-	-	-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0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20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2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점수 : 92.1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85.0	7.1	-	-	-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2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16	4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18	2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6	3		1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8	2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6	4			

②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1	인권존중 정책 선언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2	10	1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개선된다.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1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2	10	1				
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을 준거로 한다.	○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4	기업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5	자회사나 협력공단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1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8	1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자회사나 협력공단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1	인권경영 성과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4	12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1	구제절차 마련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2	10	1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노력한다.	○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1	고용상 비차별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10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1	고용상 남녀 비차별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2	10	1				
1	공단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6	공단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1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1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3	
1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자공단, 지사 등)은 현지 문 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4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1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1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1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10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4	공단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1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2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4.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1	강제 노동 금지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6	16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공단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					

4.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1	자공단·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2				2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5. 아동 노동의 금지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2	12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5. 아동 노동의 금지

분야1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 조치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6					8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 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6. 산업안전 보장

분야1	작업장 안전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6	2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 적이도록 유지한다.	○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 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6. 산업안전 보장

분야1	임산부 등 장애인 보호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 키지 않는다.	○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 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6. 산업안전 보장

분야1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8	1				
1	공단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5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6. 산업안전 보장

분야1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2				2	
1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안전계획 등 수립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6	1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협력회사 인권경영자가진단 실시, 교육
2	공단은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공단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권 서약서 징구
4	공단은 협력공단과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인권 서약서 징구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1	모니터링 실시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2	1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공단 기타 주요 협력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공단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6	1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분야1	지역주민 인권 존중 · 보호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	2				6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분야1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	2				2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9. 환경권 보장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0	6	2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9. 환경정보의 공개

분야1	환경정보의 공개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4				1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9. 환경정보의 공개

분야1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4				3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9. 환경정보의 공개

분야1	비상계획 수립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6	1			1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 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공단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정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10.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0						6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10.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1	제품 결함시 조치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2	2				2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10.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1	소비자 사생활 보호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12	10	1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 마포농수산물시장 인권영향평가

1. 공정 운영							
분야1	공정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공단은 시장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공단이 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메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4	고객의 알권리 보장은 잘되고 있는가?	○					
2. 사업자 선정							
분야2	사업자 선정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공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자 선정과정은 차별없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					온비드시스템 이용
2	공단은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입주자와 입주매장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3	공단은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6	1				
1	시장에는 장애인 및 여행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장에는 관련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렛 등)이 설치되어 있다.		○				
4	시장 주차장에는 여성우선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다.	○					
4. 안전보장							
분야4	안전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6	1				
1	공단이 관리하는 시장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난간 보강공사 실시
2	시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				안전요원 배치 보완
3	시장에는 납품차량 및 장비 등의 운용을 위한 안전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					
4	시장에서는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					

5. 근무자 인권보호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작업 근무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다.	○					
3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인권교육 실시 등)	○					

6. 시설 운영

분야6	시설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시장의 설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국제 인권, 환경, 산업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2	시장의 설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 한다.	○					
3	시장의 시설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 공단의 인권 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					

7. 지역주민 환경 보장

분야7	지역주민 환경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4	1				
1	시장은 지역주민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지 시설이 있다.	○					
2	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공단에서는 시장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1. 공정운영

분야1	공정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시설에는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4	고객의 알권리 보장은 잘되고 있는가?	○					

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4	1				
1	시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에는 외국인,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 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설치되어 있다.		○				
3	시설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4. 안전보장

분야4	안전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1	시설에는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				
3	시설 화장실에는 안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					
4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5. 근무자 인권보호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4	1				
1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다.	○					
3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인권교육 실시 등)	○					

6. 시설 운영

분야6	시설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시설의 설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국제 인권, 환경, 산업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2	시설의 설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 한다.	○					
3	시설의 시설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 공단의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					

7. 지역주민 환경 보장

분야7	지역주민 환경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시설은 지역주민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지 시설이 있다.	○					
2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공단에서는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시설관리 분야 인권영향평가

1. 공정운영

분야1	공정 운영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8					
1	공단은 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시설에는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4	고객의 알권리 보장은 잘 되고 있는가?	○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4	2				
1	시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에는 관련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3	시설에는 외국인,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 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설치되어 있다.		○				
4	시설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시설마다 차이있음

4. 안전보장

분야4	안전보장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6	1				
1	시설에는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				
3	시설 화장실에는 안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					
4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5. 근무자 인권보호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4	2				
1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다.	○					
3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인권교육 실시 등)	○					

6. 시설 운영

분야5	시설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시설의 설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국제 인권, 환경, 산업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2	시설의 설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 한다.	○					
3	시설의 시설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 공단의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					

7. 지역주민 환경 보장

분야7	지역주민 환경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시설은 지역주민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지 시설이 있다.	○					
2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공단에서는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인권영향평가

1. 공정운영

분야1	공정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공단은 주차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계약 등)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실에는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4	고객의 알권리 보장은 잘 되고 있는가?	○					

2. 사업자 선정

분야1	사업자 선정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선정과정은 차별없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					
2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선정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3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선정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분야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6	1				
1	시설주차장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주차장에는 관련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4	시설주차장은 여성 안심 주차장으로 인증되었다.	○					

4. 안전보장

분야1	안전 보장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6					
1	주차장에는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설주차장에는 안전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					
3	사업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5. 근무자 인권보호

분야1	근무자 인권보호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4	1				
1	현업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다.	○					
3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인권교육 실시 등)	○					

6. 시설 운영

분야1	시설 운영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6					
1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국제 인권, 환경, 산업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2	주차장의 설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다.	○					
3	주차장의 시설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 공단의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					

7. 지역주민 환경보장

분야1	지역주민 환경 보장						근 거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6					
1	주차장에는 지역주민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지 시설이 있다.	○					
2	주차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주차장에서는 주차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노상주차장 인권영향평가

1. 공정 운영							
분야1	공정 운영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8	8					
1	공단은 주차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 등)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실에는 성희롱·성폭력 메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3	공단은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4	고객의 알권리 보장은 잘 되고 있는가?	○					

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분야3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2		1				
1	공단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설치 되어 있다.		○				

4. 안전 보장							
분야4	안전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6					
1	주차장에는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2	주차장에는 관리원이 배치되어 있다.	○					
3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5. 근무자 인권보호							
분야5	근무자 인권보호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6	2	2				
1	현업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다.		○				
3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인권교육 실시 등)	○					

7. 지역주민 환경 보장							
분야6	지역주민 환경 보장						
구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 거
점수	4	4					
1	주차장에는 지역주민 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지 시설이 있다.	○					
2	공단에서는 주차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기관운영(경영기획팀, 감사혁신팀)지표 정의서

KPI 정의서										
전략과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지 표 관 리 부 서	감 사 혁 신 팀	특 성		고 유	
CSF	인권경영 활동 노력						BSC 관점		내부프로세스	
KPI	인권영향평가 점수 달성도						속 성		결과	
지표정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성과를 평가한다.				가중치					
과거실적 및 목표	Y-3 실적	Y-2실적		Y-1실적	과거 3년평균	목 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수 : 100점				
지표(실적) 산 식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				주 기	연 간				
					단 위	점				
점수산출 방 식	달성도 × 가중치				평 가 기 준	개선도	달성도		절대평가	
							○			
산출방식	개 선 도			달 성 도			절 대 평 가			
				실적/목표						
등급구간	개선도 등급					달성도 또는 절대평가 등급				
	S	A	B	C	D	S	A	B	C	D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실적누적 방 법	합산() 최종값() 평균값()									

□ 주요사업(사업부서) 지표 정의서

KPI 정의서										
전략과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지 표 관 리 부 서	감 사 혁 신 팀	특 성		고 유	
CSF	인권경영 활동 노력						BSC 관점		내부프로세스	
KPI	인권영향평가 점수 달성도						속 성		결 과	
지표정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성과를 평가한다.				가중치					
과거실적 및 목표	Y-3 실적	Y-2실적	Y-1실적		과거 3년평균	목 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수 : 100점				
지표(실적) 산 식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				주 기	연 간				
					단 위	점				
점수산출 방 식	달성도 × 가중치				평 가 기 준	개선도	달성도		절대평가	
							○			
산출방식	개 선 도			달 성 도			절 대 평 가			
				실적/목표						
등급구간	개선도 등급					달성도 또는 절대평가 등급				
	S	A	B	C	D	S	A	B	C	D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실적누적 방 법	합산() 최종값() 평균값()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경영 체계

제5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인권경영 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표 제1호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기준으로 실천한다.

제7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이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경영 담당자)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계획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 교육) ①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이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이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인권 관련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상임이사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컨설팅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표자라 수 있는 자.
3.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단,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이해관계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추천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4 장 인권영향평가

제1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이사장은 공단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수 있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외부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인권실태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21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
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
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 부서 및 사
업장을 관장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이행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23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
에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② 인권상담센터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당업무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1인을 센터장이 지
정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3. 인권침해사건의 인원위원회 회부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이 외부전문가의 조언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언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권상담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⑤ 인권상담센터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원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장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
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 한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인권침해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 20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무기명 신고)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직원의 인권보호) 공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31조(구제조치) 공단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제 6 장 보 칙

제3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은 이 규정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1.17>

이 규정은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인		인권침해 내 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책임과 확 인
		소 속	성 명				

인 권 침 해 심 의 결 정 서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			
3. 결정사항			
4. 관련규정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4호 서식)(제23조 관련)

인권 침해 조사 요청서					
접수현황	년 월 일(접수번호 :)				
신청현황	• 이 름 :		• 생년월일 :		• 성별 :
	• 연락처 :		• 이메일		
피 해 자	• 이 름 :		• 생년월일 :		• 성별 :
	• 연락처 :		• 이메일 :		
	• 신청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모르고 있다()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인권침해 행위자	• 이 름 : • 소 속 : • 연락처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내용에 관하여	• 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기관 및 사건번호() • 마포구 등 상부기관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기관 및 사건번호()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내용			
일 시		장 소	
첨부서류	☐ 있음(서류명) ☐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